

(첨부2)

# 표준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## 1.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·제한 조항

### 【체크카드 회원약관(개인회원용)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9조(카드이용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고신고 계좌</li> <li>2. 법적 지급제한 계좌</li> <li>3. 지급가능잔액(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) 부족 계좌</li> <li>4.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</li> <li>5. 기타 <u>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카드이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</li> <li>6. <u>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u></li> </ol>

## 【체크카드 회원약관(기업회원용)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2조(카드의 이용 및 제한) ① ·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고신고 계좌</li> <li>2. 법적 지급제한 계좌</li> <li>3. 지급가능잔액(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) 부족 계좌</li> <li>4.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</li> <li>5. <u>기타 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카드의 이용 및 제한) ① ·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</li> <li>6. <u>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u></li> </ol>

## 【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<b>제14조(서비스의 제한) ①</b>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</li> <li>2.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</li> <li>3.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</li> <li>4.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</li> <li>5.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</li> <li>6. 기타 이용자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. 다만, <u>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<b>제14조(서비스의 제한) ①</b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이용자의 불법행위가</u> ----- -----</li> </ol> <p>②----- <u>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----- ----- <u>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</u> ----- -----</p>

## 【「오픈뱅킹공동업무」 금융정보조회 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7조(금융정보조회 중단) ① 저축은행은 <u>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<u>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7조(금융정보조회 중단) ① ----- ----- <u>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</u> -----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간편이체 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7조(서비스 중단)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비스 장비의 보수, 업그레이드, 점검, 교체, 고장, 통신장애,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</li> <li>2.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저축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(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, 교체, 고장, 통신두절, 일시적 장애발생 등)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4. 정전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5. 기타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 </ol>	<p>제7조(서비스 중단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

## 2. 저축은행 면책조항

### 【체크카드 회원약관(개인회원용)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3조(카드의 관리)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</p> <p>② 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, 관리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,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<u>모든 책임</u>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</p>	<p>제3조(카드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 ----- 책임은 ----- -----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.</p>
<p>제15조(위·변조카드에 대한 책임) 위·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.</p>	<p>제15조(위·변조카드에 대한 책임)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다만,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1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</p> <p>2. 카드의 양도,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회원이</u> <u>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3.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

#### 【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 우에는,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 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 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(지 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 채무발생을 포함한다), 곧 이를 변제(또는 이행)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.</p> <p>1.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 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·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. 다만, 담보재산 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.</p> <p>2.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1 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 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</p>	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,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 채무 발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 음). 이 경우, 저축은행은 채무자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.</p> <p>1.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 종 ----- ----- <u>도달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</u> <u>등 각종</u> ----- ----- ----- <u>도달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</p>



#### 4.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

##### 【계좌간 자동이체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준용규정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, 상호저축은행 내규 등을 준용합니다.	제10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등을 ----- -----

##### 【현금카드이용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제7조(약관의 준용)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이 정한 C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, 상호저축은행 내규 등을 따릅니다.	제7조(약관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등을 ----- ---